영등포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4. 2.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277호로 2014년 2월 4일 오현숙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어린이 안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보호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어린이 안전의 수준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사고의 34% 가량이며, 2009 ~ 2011년 사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7,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중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69.5%인 32,784건으로 나타남.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4.2명(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2)으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

연도	'05년	'07년	'09년	'11년
사망자	8.2명	6.2명	5.4명	**4.2명**

* OECD 주요국가('05년 기준) : 독일 3.7명, 영국 3.3명, 스웨덴 2.7명

❍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에는 안전행정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이 어린이를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